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제1709호)

검 토 보 고

2016.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강 남 일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인화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16. 8. 19.
3. 회 부 일 : 2016.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에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생신고서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모의 작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 ② (생 략) ③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u>사용하여</u> 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⑤ (생 략)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용하되</u> <u>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u> ----- ④· ⑤ (현행과 같음)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범위의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¹⁾에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등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1)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

1. ~ 4. (생 략)
5. 이름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불수리한 사건 등이 발생되어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작명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이 수긍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부모의 작명권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대행하여 지을 수 있는 권리²⁾로 인정되고 있는데,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한자로만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작명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서울동부지법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2013브17, 2015. 6.2.)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이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글만으로’ 또는 ‘한자만으로’ 이름을 짓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 사건 예규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항고인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음.

2) 작명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친권의 작용으로 보는 견해와 작명되는 자의 고유의 권리이나 부모가 이를 대행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둘째,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름에 한글 또는 한자 이외의 외국어, 숫자 등의 다른 문자를 기재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 한글 또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음.

현재 대법원예규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에서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이름에 한글·한자를 혼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률이 아닌 대법원예규에 의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이 침해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셋째,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될 경우 성과 이름이 혼동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의 문제로 한글·한자의 혼용표기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 혼동의 여지가 크지 않고, 법원시스템 등은 부모의 작명권 보호를 위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하여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첫째,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³⁾에 비추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이름은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

둘째, 한글·한자 혼용표기(예 : 홍吉동, 홍길童)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름에 관한 역사 및 사회일반의 인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민법 제781조에서는 부 또는 모 한쪽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 양성쓰기의 편법으로 이름에 첫 자만 한자(부 또는 모의 성)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한글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셋째, 이러한 표기방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글·한자의 혼용표기를 위한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한 예산⁴⁾과 구축기간이 필요하고, 법원 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 그러한 표기방법을 반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⁵⁾.

문의처
이경우 입법조사관(788-4990)

3)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4) 법원행정처에서는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함.

5) 예를 들어 여권의 경우 성명란은 한글 및 영문으로만 작성되고, 주민등록증은 병기방식임.